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0일, 오세희의원 등 15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3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오세희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용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중소기업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는 없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위반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되,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등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

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8까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오세희의원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미국·독일의 사례와 같이 법원 결정에 따라 전문가가 관련증거를 조사하도록 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기술침해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회복이라는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는 범위에서 양 당사자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